

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3. 21.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2. 3. 21.
- 다. 상 정 일 자 : 2002. 4. 4.(제10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, 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사회복지과장 이중근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의 자격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시설운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화와 규제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공립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, 시설수탁자의 자격연령을 만62세 이하로 제한하던 조항을 폐지함.

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본 조례개정건은 영유아보육법등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각급 자치단체 조례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의 자격연령 상한선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는 위법 부당한 조항을 삭제하여 전문화된 양질의 시설운영자 참여확대와 영유아보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

- 보건복지부에서도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 도입전까지는 시설운영 수탁자 연령을 탄력적 운영토록하는 사실상의 정년제 폐지방침을 각급자치단체에 전달한 바 있고
- 현재 중구, 서구등 6개구를 제외한 10개구에서도 수탁자 자격연령을 미규제하고 있을뿐아니라 특히, 행정자치부·감사원등에서도 법령 미근거 규제 운영여부를 확인·감사하는 점등을 감안한다면
- 위 조례 개정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